

규정소개/

인증업무규정

〈87. 4. 28제정〉

〈시험소 인증업무실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가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험소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자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 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설계, 제조, 조립, 검사, 시험, 포장, 보관 출하 등의 책임을 가진 주요조직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품질인증(또는 “인증”)

시험소가 이 규정에 따라 인증대상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제조자가 당해 제품을 인증기준 및 관련규격의 요구조건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인증기준(또는 “인증기준”)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소의 기준으로 제품 기준, 공장심사 기준 및 관련기준을 말한다.

4. 품질보증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있음을 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규격

품질인증 또는 품질보증에 근거가 되는 제조자의 사내규격 또는 사양서를 말한다.

6. 품질보증계획서

제조자가 해당 인증제품의 품질이 인증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사내관리체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7. 공장심사

시험소가 제조자로부터 제품인증을 의뢰받고 인증기준에 의거 관련규격 및 공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인증시험(또는 “인증시험”)

시험소가 제조자로부터 제품인증을 의뢰받고 시험소 인증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9. 인증유지 확인시험(또는 “확인시험”)

시험소가 품질인증 유지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이 공장에서 발췌한 시료

또는 시판품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4조(인증대상제품) 인증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의 분야중 당협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건축구조재 및 내장재 분야
2. 방염제품 분야
3. 소방용 기계기구 분야
4. 기타 방화, 안전 관련제품 분야

제5조(인증의 범위) 품질인증의 범위는 제조자가 품질인증신청시에 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험소가 인증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2장 품질인증

제6조(인증신청) 시험소는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신청제품 관련 사내규격
3. 품질보증 계획서
4. 품질보증책임자 승인서

제7조(서류심사) ① 시험소는 전조 각 호의 서류를 이 규정 및 품질인증 기준 등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심사시 관계되는 제조자의 사내규격, 사내관리체계 또는 신청서류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그 취지를 권장하고, 변경 또는 개선토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체결) ① 방재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류의 보완과 검토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인증 계약서를 작

성하여 제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계약체결시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에 필요한 제비용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예치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신청 철회) 시험소는 계약체결후 제조자로부터 인증철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서류를 반환하고, 그 시점까지 소요된 인증비용을 상호 정산한다.

제10조(공장심사의 통보) 소장은 품질인증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공장심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조자에게 공장심사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는 인증기준에 의거 최근 6개월간의 관리 기록실적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미만의 관리 기록실적에 의할 수 있다.

②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당해 인증기준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제조자에게 개정사항을 통지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보완토록 한 후 개정된 인증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품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인증후 1년 이내에 인증제품 외의 것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의 공장심사는 기인증시 심사한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공장 또는 제품의 특성 등을 감안,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보고서)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완료 후 지체없이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시험) ① 인증시험용 시료는 인증심사원이 현재 생산중인 공정에서 채취

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은 인증심사원의 주관하에 시험소 또는 시험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행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 등으로 운반이 곤란하거나,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생산공장에서 인증시험을 할 수 있다.

③ 시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의 품질보증관련자를 인증시험에 입회시킬 수 있다.

제14조(시험보고서) 시험원은 인증시험 완료후 지체없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시험보고서를 작성,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의 단위) 품질인증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판정) ① 소장은 제6조의 인증신청서류와 공장심사 및 인증시험보고서를 인증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 평가결과 또는 인증시험결과 인증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인증심의회에 회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전항의 인증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달사항으로서 제품의 특성상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인증심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외양 및 형상(표면불균일, 비틀림, 기포 등)
2. 치수 및 무게(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치수 및 무게)
3. 표시사항(용량표시누락, 표시위치위반 등)
4. 기타 소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17조(인증판정 결과통보) 시험소는 신청제품

에 대하여 인증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품질인증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전 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실을 문서로 제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유지

제18조(사후관리계약) ① 소장은 사후 관리계약서 작성시 사후관리비용, 인증유지를 위한 제조조건 및 인증마크, 인증라벨 또는 인증합격증명서 사용, 기타 인증제품에 대한 광고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조의 인증결정을 통보받은 제조자가 60일 이내에 인증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인증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9조(인증마크, 라벨, 증명서의 내용) ① 시험소는 인증제품에 인증마크의 인쇄 혹은 인증라벨의 부착 등의 표시방법으로 기타 제품과 식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는 인증제품의 특성 또는 제조자의 요구조건을 참작하여 인증마크의 인쇄 혹은 인증라벨 부착 등의 표시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험소는 인증마크의 인쇄 또는 인증라벨의 부착 등이 곤란한 인증제품에 있어서는 시험소가 승인한 인증합격증명서를 발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④ 인증마크, 인증라벨 및 인증합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시험소 또는 시험소의 감독하에 제조자의 품질보증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마크 및 부대표시사항) ① 시험소

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인증마크의 인쇄표시를 승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증마크에 부대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험소의 명칭 또는 약호(FILK)
2. 시험소의 인증번호
3. 인증의 범위 또는 등급
4. 제조자의 명칭 또는 그의 약호
5. 제품검사 로트, 제조일자 등 로트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약호 또는 기호
6. 기타 시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대표시사항은 통상적으로 출하된 로트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 또는 검사보고서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항을 포장 또는 부품 등에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마크 및 부대표시사항은 개개의 인증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의 인증제품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접착테이프 등으로 봉인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험소는 개개의 제품에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을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인증마크의 효력은 최소 포장단위까지로 하고 그 이하의 단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인증마크를 나타내는 스탬프, 금형 또는 봉인재료 등은 시험소에서 승인한 안전조건하에서 품질보증책임자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소가 언제라도 이에 대한 사용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용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및 전조 제1항 각 호중 필요사항을 인쇄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증라벨은 시험소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험소는 인증제품 출하시 인증심사원의 입회하에 인증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 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22조(품질보증 책임자의 선임) ① 시험소는 제조자에게 소장이 정하는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춘자를 품질보증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품질보증책임자 업무중 일부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보조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품질보증검사의 종류) 품질보증검사의 종류는 로트별 검사(Lot-by-Lot Inspection) 및 정기적 품질검사로 구분한다.

제24조(로트별 검사(Lot-by-Lot Inspection))

① 시험소는 제조자에게 품질인증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품질보증 책임자의 관리하에 관련규격의 규정에 의하여 로트별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로트는 규격에 규정된 대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1개의 제조 로트별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조조건(원자재, 제조공정 및 설비와 인원 등)하에서 생산되는 로트로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제조로트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에 의거 복수의 제조로트를 하나의 검사로트로서 집합시키는 경우, 그기간은 제조자와 시험소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1조(인증라벨) ① 시험소는 인증라벨 부착

제25조(정기적품질검사) ① 시험소는 제조자에

게 로트별 검사에 합격한 최소 3개 로트로부터 발췌한 시료에 대하여 정기적 품질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3개로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시험소는 인증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인증유지 확인시험으로서 정기적 품질검사를 대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보존시료) ① 시험소는 인증제품 출하 후 사용자의 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에게 정기적 품질검사에 제공되었던 합격로트에서 시료를 발췌하여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존시료의 수량 및 기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인증기준 미달제품의 발생) ① 시험소는 로트별 검사시 인증기준미달이 발생한 경우 제조자에게 아래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로트별검사도중 결점이 발견된 시료는 인증제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한다.

2. 로트별검사서 불합격된 로트는 관련 규격에 의하여 재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재검사 결과 불합격된 로트는 인증제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한다.

3. 로트별검사 기록보고서에는 검사에서 발견된 결점이 기록되도록 한다. ② 시험소는 정기적 품질검사시 인증기준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자에게 시험소에 신고하는 동시에 출하를 정지하고 원인별로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준미달원인이 단지 검사실시상의 과오였을 경우에는 정확한 방법으로 재검사하도록 한다.

2. 기준미달 원인이 명확하여 즉시 개선

될 수 있는 제조상의 과실이었을 경우에는 개선후의 로트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개선효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기준미달 원인이 즉시 개선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별검사 등에 의하여 불량품을 골라내고 이 선별검사는 결점이 개선되어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적 품질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한다.

4. 기준미달 원인이 개선된 때에는 이 결과에 대해 시험소의 승인을 받고 출하를 재개하도록 한다.

제28조(인증유지의 확인) ① 시험소는 수시로 제조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인증조건을 유지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제조자에게 지시하여 인증조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문회수는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 등에 따라 소장이 정한다.

제29조(인증유지확인시험) ① 시험소는 인증유지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불시에 제조자의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을 채취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제조자의 신고의무) ① 시험소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조자에게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기적 품질검사 결과가 규격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인증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

3.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명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시험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험소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아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내규격의 규정내용
2.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3. 품질보증책임자
4.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제31조(제조자의 보고의무) 시험소는 제조자에게 제24조(로트별 검사) 제25조(정기적품질검사)의 검사기록 및 인증마크, 인증라벨 또는 인증합격증명서의 사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 및 보고사항 조치) 시험소는 제조자로부터 전2조의 신고 또는 보고가 있는 경우 공장심사, 품질인증시험, 인증유지확인시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인증범위의 변경) ① 시험소는 제조자로부터 인증제품의 규격, 형식, 등급의 추가, 축소 등 인증범위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인증시험, 확인시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는 관계인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제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공장심사, 인증시험 또는 확인시험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품질인증의 정지 및 취소

제34조(품질인증의 정지)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품질인증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인증유지 확인시험)에서 불합격이 된 경우

2. 제30조(제조자의 신고의무)또는 제31조(제조자 보고의무)의 신고나 보고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3. 인증기준과의 경미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인증조건 또는 인증업무규정이 올바르게 적용,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험소는 인증정지시 해당제품의 규격, 형식구분이 명확한 경우의 인증기준 미달 구분을 제외한 기타 구분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계속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증범위를 해당구분에만 국한시켜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시험소는 품질인증을 정지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정지 통지를 하고 발간물 등에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품질인증의 취소)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어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한다. 다만, 취소조치를 받기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제품의 품질, 성능 등이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출하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조자가 품질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이 정지된 후, 30일 이내에 그 원인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3. 제30조(제조자의 신고의무) 또는 제31조(제조자의 보고의무)의 규정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4. 품질인증마크, 인증라벨, 품질인증합격증명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 해당 인증제품의 출하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없었을 경우

6. 해당 인증 기준이 폐기된 경우

7. 인증제품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8. 기타 소장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험소는 전항에 의거, 품질인증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에게 취소 통지서를 송부하고, 발간물 등에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시험소는 품질인증 정지 및 취소통지시 제조자가 시험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첨부하여 문서로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제조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기준

제37조(인증기준의 제정) ① 인증기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는 이사장이 행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제정된 인증기준을 “방재시험소 품질인증기준”(약칭 “기준”, “인증기준” 또는 “FS”라고 한다)이라 한다.

제38조(인증기준안의 작성 및 심의) ① 인증기준안 또는 개정안은 담당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담반을 정하거나 외부용역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증기준안은 인증제품 품종별로 제품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시험소는 필요할 경우 시험기준, 검사기준 등 관련기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인증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기준안에 대한 설명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등) 인증기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기존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0조(인증기준의 공고) 소장은 인증기준이 제정, 개정, 확인 또는 폐지되었을 때는 시험소 발간물 등에 공고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품질인증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제41조(인증심의회) 품질인증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증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험소내에 품질인증심의회(약칭 “인증심의회”)를 둔다.

제42조(인증심의회구성) ① 인증심의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두며 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7인내지 12인으로 하고 협회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 해촉할 수 있다.

제43조(인증심의회 업무, 소집 및 심의) ① 인증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질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
 2. 인증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증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 사고시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 후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이 날인하여 보고한다.

제44조(전문위원회) 인증기준의 제·개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시험소 내에 전문 분야별로 품질인증 전문위원회(약칭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장 및 간사를 두며 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시험소 연구원급 이상의 직원 및 외부인사를 전문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를 해촉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위원회 업무, 소집 및 심의)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 사고시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 후 회의록을 작성, 전문위원장

이 날인하여 보고한다.

제47조(합동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동 전문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② 합동 전문위원회의 의장은 관계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장중 소장이 정한다.

제48조(수당) 시험소 직원 이외의 인증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의소집) ① 인증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을 회의예정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심의회 위원 및 전문위원이 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인증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이 시험소 직원이 아닐 경우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인증비용

제50조(인증비용의 구성) 인증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품질인증에 필요한 비용
2.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51조(인증비용의 산정) ① 품질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산정된 비용을 합산, 적용한다.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기술료
4. 기타 제경비

②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인증제품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범위내에서 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는 시험소와 제조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2조(인증비용의 납부) ① 품질인증 비용은 품질인증계약 체결시 선납금으로 2분의 1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인증 판정 결과 통지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후관리 비용은 선납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년도 말 또는 계약된 날짜에 상호 정산한다.

제8장 기타

제53조(인증제품목록발행 및 홍보) ① 시험소 인증제품과 제조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품질인증 제품목록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는 발행된 품질인증 제품목록의 기재사항에 추가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증보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조자의 이익을 위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인증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제54조(특수인증) ① 시험소는 제조자나 사용자의 요구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이 규정에 특별조건을 추가하거나 이 규정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여 품질인증, 이에 준하는 인증 또는 증명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수인증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은 이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대표자의 권한위임) 시험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품질인증 신청을 시험소에 하는 경우 및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시험소에 보고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해당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위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56조(비밀준수의무) ① 품질인증심사원 및 인증업무 관계자는 업무수행중 얻어진 어떠한 비밀사항이라도 제조자 또는 그 대리인과 사전 협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항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소장은 이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여 관계자의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협업)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시험소와 제조자 상호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 소장이 정한다.

제59조(관할법원) 인증업무에 관한 소송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시험소 관할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